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671호 2022. 5. 9.(월)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\_\_\_\_\_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7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2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\_\_\_\_\_ 3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4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\_\_\_\_\_ 7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-66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5. 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533 외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2.5.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2-5-9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04-59, 불로동 204-65, 211-32, 212-~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533 (왕길동)	20081231	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	
2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7-6	인천광역시 서구 가원로 117번길 46 (마전동)	20081231	가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78-22	인천광역시 서구 함들로 66-70 (시천동)	20090922	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함들로라 명명	
4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	인천광역시 서구 서로4로 88 (원당동, 에미지 트리플 에듀)	20200420	'서로 발전하는 도시'에서 착안, 신도시의 날복을 잇는 네번째 도로	검단신도시 AA11 (에미지 트리플 에듀)
5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-123	인천광역시 서구 청들로 100 (청라동)	20101111	청라대로 동쪽에 위치	
6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-79	인천광역시 서구 청들로 154 (청라동)	20101111	청라대로 동쪽에 위치	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-67호

##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2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인천광역시고시 제1988-1406호(1988.12.2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【도로: 소로3-2호선, 사업명: 석남동 소로3-2호선 도로개설공사】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서구청(도시계획과, ☎032-560-476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2. 5. 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변경사유

-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용지 변경

### 2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 없음)

-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2-47번지 일원

### 3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 없음)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2호선)
- 명칭: 석남동 소로3-2호선 도로개설공사

#### 4. 사업의 규모(변경)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연장(m)			면적 (㎡)	
				결정	금회	결정	기시행	금회		잔여
도로	소로	3	2	6	6	320	-	320	-	2,060

※ 사업면적 변경: 2,088㎡ → 2,060㎡

#### 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 없음)

- 성명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- 주소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, 서구청)

#### 6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 없음)

- 실시계획 인가일 ~ 2023. 12. 31.

####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(변경)

- 따로 붙임

#### 8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

□ 사업명 : 석남동 소로3-2호선 도로개설공사

(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)

연번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㎡)	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지적	편입	성명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및 내용	
1	기정	석남동	223-673	유	1,080	200	황용*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-***				
	변경	석남동	223-942	유	198	198	황용*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-***				
2	변경 없음	석남동	223-715	유	8	8	박준* 외1	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2-** ***				
3	기정	석남동	223-714	잡	5,177	1,666	김종*	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0-** **				
	변경	석남동	223-943	잡	1,645	1,645	김종*	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0-** **				
4	기정	석남동	222-45	잡	4,110	162	국	기획재정부				
	변경	석남동	222-84	잡	157	157	국	기획재정부				
5	변경 없음	석남동	222-47	잡	30	30	차수*	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*, ***				
6	변경 없음	석남동	222-46	잡	7	7	차수*	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*, ***				
7	변경 없음	석남동	222-51	잡	15	15	차수*	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*, ***				

#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

□ 사업명 : 석남동 소로3-2호선 도로개설공사

연번	소재지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수량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		관계인		비고
	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1	석남동	223-942	컨테이너	가설	28.8㎡	창고	황용*	서구, 석남2동 223-**			
			웬스	EGI	24㎡	웬스					
2	석남동	223-943	조립식 가설 건축물		1,652 ㎡	공장	김종*	강남, 논현 130-**			
3	석남동	222-84	담장	L=4.5m, H=2m	9㎡	담장	김종*	강남, 논현 130-**			
			웬스	L=25m, H=2m	50㎡	웬스					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840호

#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(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5. 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공 고 기 간 : 2022. 5. 9. ~ 2022. 5. 23.(15일간)

## 2. 공 고 내 용

1. 행정처분 제목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			
2. 대상차량	등록번호	60구1863 등 11건(붙임 참조)		
	차 명			
3. 운행정지사유	소유자의 요청 등			
4. 법적근거	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			
5. 관할관청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구청	담당부서	차량민원과
	주소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) (☎ 032-560-4877, FAX 032-560-2793)		

### 3. 유 의 사 항

- 1)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2)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3)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(무등록 자동차)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4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(☎ 032-560-4877)

## ■ [붙임]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차명	소유자명	운행정지명령 등록일
1	60구1863	A4 2.0 TDI quattro	김*수	2022.04.01
2	176비5555	Mercedes-AMG G63	**캐피탈(주)	2022.04.06
3	51노8820	BMW 320d	박*경	2022.04.11
4	325어5547	벤츠 E220 d 4MATIC	**캐피탈(주)	2022.04.14
5	34루6411	싼타페(SANTAFE)	오*환	2022.04.15
6	67나0786	카니발	강*은	2022.04.15
7	160너3601	스포티지	황*혁	2022.04.19
8	58부8471	K3	송*주	2022.04.21
9	24어5137	라세티 1.6 DOHC	HOA** **** **NH	2022.04.22
10	11누4546	벤츠S550 4MATIC	(주)**에너지	2022.04.26
11	78나5393	그랜드 카니발	신*환	2022.04.27